

웅지세무대학교	준법통제에 관한 규정	문서번호	3-5-03(K)-0
		제정일자	20.03.26.
		최근개정	-
		주관부서	부속실
		홈페이지공개	공 개

웅지세무대학교 부속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웅지세무대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준법통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학교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업무와 그와 관련된 교직원의 모든 행동에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법통제”란 교직원의 법령 및 학교 제 규정(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통제 활동을 말한다.
2. “준법통제 기준”이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포함한 교육 관련 법령, 「학교정관」, 「학교 규칙」 및 「학교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라 학교가 준수해야 할 모든 규정과 내용을 말한다.
3. “법적 위험”이란 교직원이 법령 등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4. “교직원”이란 근로 조건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교원과 직원을 말한다.
5. “준법지원위원회”란 준법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평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법행위의 중지, 개선 또는 시정 등을 요구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준법통제 조직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준법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의 준법통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장 직속으로 준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은 총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때 교직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2.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
3.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감사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직원으로서 건학이념의 구현에 필요한 자

⑤ 총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 및 처리 사항 등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위원의 임기로 한다.

③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총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총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 1명을 간사로 지정하여 회의에 관한 기록 그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맡길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소관 사무)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준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3. 준법통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준법통제 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준법통제에 관해 총장이 부여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권한 및 의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준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2. 준법통제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보고
 3.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출요구 및 진술의 요구
 4. 교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5. 준법통제 기준 등을 위반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 요청
- ② 위원회는 준법통제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총장에게 인력과 예산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직 시뿐만 아니라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준법통제 활동

제10조(일상적인 준법지원) ① 위원회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법적 자문을 하며, 교직원이 계약체결 등 법적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출을 해당 교직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교직원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자율적인 준법 점검) ① 각 부서는 자율적인 준법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자율 점검 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각 부서의 준법점검 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자율점검 실태를 평가한다.

제12조(준법서약 및 교직원 교육) ① 교직원은 매 학년마다 위원회가 정하는 준법서약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교직원이 법령 등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준법강령의 준수) ① 모든 교직원은 다음의 준법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은 언제나 학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며, 학교와의 이해충돌 행위, 내부 거래행위 등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2. 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불공정거래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교직원은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이나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 안 된다.
 4. 교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가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②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한 준법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제보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4조(위반 시의 처리) ① 위원장은 준법통제 기준 등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총장에게 보고하고 중지·개선·시정·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위원회의 요청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교직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를 받은 총장은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교직원 포상) 위원장은 준법통제 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거나 제보를 통해 학교의 예산절감, 손해 예방 등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직원의 포상이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세부사항) 이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1판-제정/시행/공포 2020.03.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